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74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6.

발 의 자: 강준현 • 박상혁 • 임오경

권칠승 · 송재봉 · 이정문

송옥주 · 천준호 · 이인영

황정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, 모집인 및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업으로 하지 않는 제휴모집인에 한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 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해당 규정으로 신용카드업자는 제휴모집인이 될 수 없어 타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·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.

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·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(안 제14조의2 및 제24조의 2).

법률 제 호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"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"을 "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"로 한다.

제24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신용카드회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모집행위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4조의2(신용카드회원의 모집)	제14조의2(신용카드회원의 모집)		
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	①		
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			
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			
다.		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3.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	3		
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			
휴(提携) 계약을 체결한 자	<u>신용</u>		
(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	카드업자가 아닌 자로서 신용		
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)	카드회원의 모집을		
및 그 임직원	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제24조의2(신용카드업자 등의 금	제24조의2(신용카드업자 등의 금		
지행위)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	지행위) ①		
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			
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			
각 호의 행위(이하 "금지행위"			
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			
다.	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3. 신용카드회원의 합리적인 선		

	택을 방해하는 모집행위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